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호식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4월 9일
-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 내용 중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바꾸고, 일부 미비한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변경함
 - 현행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개정 :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조례의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9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안 제13조)
-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안 제22조)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부서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의 보다 원활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조례 보완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